

1. 개정이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ver The Top)의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고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지정 및 재지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85호, 2022. 9. 27. 공포, 2023. 3. 28. 시행)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준수사항, 평가, 시청지도 수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자체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교육, 영등위 등급 조정·직권재분류에 따른 조치, 청소년 보호 시청지도 수단 제공 등 준수사항 규정 (제15조의2)
- 나. 사업자의 준수사항, 영등위 등급조정·직권재분류 조치 등 자체등급분류업무수행 적정성을 대상 연도 다음 해 1월31까지 매년 평가 (제15조의4)
- 다. 청소년에게 적합한 등급·내용정보 설정, 최근 3개월간 이용내역 확인, 가입자 요청시 이용내역 제공 등 친권자 시청지도수단 제공 (제15조의5)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 협의 예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50조의4제3호에 따른 등급분류책임자는 해당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임원 또는 자체등급분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등급분류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하여야 한다.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총괄할 것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한 청소년 보호 및 이용자의 불만처리 업무와의 협력체계를 운영할 것
3.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기준, 등급분류 사례 등 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에 필요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이수할 것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시간, 교육의 내용, 신청 절차 및 비용의 정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④ 법 제50조의4제5호의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0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갖추었음을 확인하거나 같은 조항 단서에서 정한 정당한 권리의 표시방법에 따를 것
2. 법 제50조의7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3.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시청지도수단을 제공할 것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세부사항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제15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절차) ① 영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4서식과 같다.

② 영 제23조의4제3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5서식과 같다.

③ 영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는 별지 제19호의6서식과 같다.

④ 영 제23조의4제6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7서식과 같다.

제15조의4(자체등급분류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① 영상물등급위원회

는 법 제50조의8제4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업무수행 적정성 평가(이하 “적정성 평가”라 한다)를 평가대상연도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실시하고 평가결과와 이에 따른 업무개선 권고를 평가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적정성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영상물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의5(친권자 등의 시청지도수단 제공)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시청 지도를 할 수 있는 수단”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보할 것
2.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시 청소년 가입자가 최근 3개월간 온라인비디오물을 이용한 내역(등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할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
 - 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자녀에게 알맞은 등급이나 내용정보를 선별하여 시청하도록 설정할 수 있게 할 것
 - 나. 가입자가 그 가입자의 계정을 통하여 최근 3개월간 온라인비디오물을 이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다. 가입자의 요청시 그 가입자의 계정을 통하여 최근 3개월간 온라인비디오물을 이용한 내역을 제공할 것

제2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 등급분류번호(법 제50조 및 제50조의
2제3항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또는 영상물등급위원
회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부여한 온라인비
디오물 자체등급분류번호

별지 제19호의4서식 및 별지 제19호의5서식, 별지 제19호의6서식, 별지
제19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3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15조의4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법인명(사업자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희망하는 지정기간(5년 이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 1부 2.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 1부 3. 법 제50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법인명(사업자명),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지정기간이 만료하였을 때에는 만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지정서를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 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확인	→	지정여부 결정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	---	----	---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영상물등급위원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법인명(사업자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희망하는 재지정기간(5년 이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향후 계획 각 1부 2.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향후 계획 각 1부 3. 법 제50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4. 법 제50조의8제4항의 개선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1. 법인명(사업자명),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지정기간이 만료하였을 때에는 만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지정서를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영상물등급위원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

1. 지정번호 : 제 호
2. 법인명(사업자명) :
3. 대표자명 :
4. 사업자등록번호 :
5. 주소 :
6. 지정기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법인명(사업자명)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팩스번호

변경 사항	법인명 (사업자명)	변경 전	
		변경 후	
	주소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신고증 작성	→	발 급
신고인		처리기관: 영상물등급위원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5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50조의4제3호에 따른 등급분류책임자는 해당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임원 또는 자체등급분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등급분류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하여야 한다.</u> <u>1.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총괄할 것</u> <u>2. 제1호의 업무와 관련한 청소년 보호 및 이용자의 불만처리 업무와의 협력체계를 운영할 것</u> <u>3.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기준, 등급분류 사례 등 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에 필요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이수할 것</u> <u>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시</u>

<신 설>

간, 교육의 내용, 신청 절차 및
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
한 구체적 사항은 영상물등급위
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④ 법 제50조의4제5호의 “그 밖
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0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갖추었음
을 확인하거나 같은 조항 단
서에서 정한 정당한 권리의
표시방법에 따를 것

2. 법 제50조의7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
에 통보할 것

3.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서 정
하는 시청지도수단을 제공할
것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비디오물에 관한 세부사항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제15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절차) ① 영 제2

<신 설>

3조의4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
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4서식과 같다.

② 영 제23조의4제3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신
청서는 별지 제19호의5서식과
같다.

③ 영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는
별지 제19호의6서식과 같다.

④ 영 제23조의4제6항에 따른 자
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사항 변
경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7서
식과 같다.

제15조의4(자체등급분류업무수행
의 적정성 평가) ① 영상물등급
위원회는 법 제50조의8제4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업무수행 적
정성 평가(이하 “적정성 평가”
라 한다)를 평가대상연도의 다
음 해 1월 31일까지 실시하고
평가결과와 이에 따른 업무개선
권고를 평가 종료일로부터 1개
월 이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
다.

<신 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적정성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의5(친권자 등의 시청지도
수단 제공) 법 제53조제2항 단
서에 따른 “친권자 등 법정대리
인이 시청 지도를 할 수 있는
수단”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
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보할 것

2.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요
청시 청소년 가입자가 최근 3
개월간 온라인비디오물을 이
용한 내역(등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할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조치를 할 것

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자녀에게 알맞은 등급이나
내용정보를 선별하여 시청
하도록 설정할 수 있게 할
것

나. 가입자가 그 가입자의 계
정을 통하여 최근 3개월간

제25조(비디오물의 표시사항) 법 제65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삭제 2. <u>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 등급분류번호(법 제50조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u> 3. 삭제 4. (생략)	<u>온라인비디오물을 이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u> <u>다. 가입자의 요청시 그 가입자의 계정을 통하여 최근 3개월간 온라인비디오물을 이용한 내역을 제공할 것</u> 제25조(비디오물의 표시사항) -- ----- ----- -----. 2. <u>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 등급분류번호(법 제50조 및 제50조의2제3항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부여한 온라인 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번호</u> 4. (현행과 같음)
---	--